## 제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98 발의연월일: 2025. 1. 22.

발 의 자:이연희·박상혁·허종식

한준호 • 한민수 • 김남희

이수진 • 복기왕 • 윤종군

박 정ㆍ이정문ㆍ이광희

정준호 · 이춘석 · 손명수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궤도사업자와 전용궤도운영자로 하여금 운송 중 기계의결함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30분 이상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사고(이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라고 함)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관청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전용궤도운영자의 경우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운행중단 시간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대한 보고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궤도사업자와 전용궤도운영자가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에 대한 관할관청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는 경우 사업의 허가나 승인을 취소 또는 궤도사업 경영 등을 정지하거나 이에 갈

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고의무 미이행 시 과 대료 처분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관할관청에 대한 보고의무의 실효성 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4호의2).

한편, 현행법은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재 난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궤도 운행의 특성상 궤도운송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지 않고 매년 안전검사를 통해 안정성이 검증되고 있고 보험회사가 궤도운송사고 관련하여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현재까지 재난안전의무보험 계약체결 거부에 대한 금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궤도운송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향후 궤도운송사고 발생 위험이 커져 보험 계약체결 거부 및 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로 인해 궤도운송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궤도운송사고 관련 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계약체결 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 압류를 금지토록 하여 궤도운송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6조(보험 가입 등)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보험사업자(「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궤도시설을 본래의사용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궤도운송사고등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

- 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2. 제2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궤도사업자 또 는 전용궤도운영자
  - 6의2.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업자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허가ㆍ승인의 취소 등) ①	제12조(허가ㆍ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	
시장・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제5조제1	
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	
용궤도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	
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	
용궤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	
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	
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4의2.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u>로 한 경우</u>
15.・16. (생 략)	15. • 16.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 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 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 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26조(보험 가입) 궤도사업자 또 제26조(보험 가입 등) ① 궤도사 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 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보험사업자(「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는 궤도사업자 또 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 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영업정지 처 분을 받아 궤도시설을 본래의 사용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궤도운송사고 등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양 도 ·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4조(과태료) ①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궤도운영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4. (생 략)
- 5.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6. (생략)

<신 설>

- 7. (생략)
- ③ (생략)

아니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2. 제2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 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궤도사 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 6. (현행과 같음)
  - 6의2.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 결을 거부한 보험사업자
  - 7.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